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수의사무관 황인진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및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 머리말

국내·외를 막론하고 식품관련 사고는 연일 언론의 머릿기를 장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 안전성은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최근 웰빙(well-being)의 바람을 타면서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육류 등과 같은 축산식품은 그 자체가 영양 덩어리로 세균 등 오염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원료생산과 제조과정에서의 엄격한 안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른 어느 식품보다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가축사육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축산물 생산단계(농장·사료·도축·집유·처리·가공·운반·보관·판매)에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연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완성함으로써 국민의 주요 식품인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축산물작업장과 달리

살아있는 가축을 사육·관리하는 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은 2006년 3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단계별 HACCP 적용계획에 따라 2006년 돼지농장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였고 2007년 소농장, 2008년 닭농장 적용에 이어 2009년도에 오리농장에 대하여도 HACCP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오리농장 HACCP의 효율적인 추진과 오리사육농가, 업계,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및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개발 추진사항

품목별 HACCP 평가기준 개발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T/F팀 구성,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HACCP 분과위원회 개최, 입안예고, 축산물HACCP 고시개정 및 현장적용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검역원에서는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8년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09년 1월 오리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을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사육농가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오리농장 HACCP

【표 1】 오리농장 HACCP 실시사항평가표 구성 내역

구분	육용오리 농장(61개 항목)	종오리 농장(73개 항목)
선행요건 프로그램	1. 차단방역관리 : 7개 항목 2. 농장시설관리 : 9개 항목 3. 농장위생관리 : 9개 항목 4.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 10개 항목 5. 질병관리 : 6개 항목 6. 반입·출하관리 : 5개 항목	좌 등
HACCP 관리	8. HACCP 관리 : 15개 항목	7. 알관리 : 12개 항목 8. HACCP 관리 : 15개 항목

평가기준을 조기에 개발하여 2009년 5월 13일 검역원에서 오리농가, 협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5월18일 오리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개정 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오리농장에 대하여 동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내용

1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구성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은 농장현황,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다. 평가항목은 육용오리 61개 항목, 종오리 7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2 선행요건프로그램 내용

선행요건프로그램은 가축사육단계의 경우 일부 관련단체나 현장에서 GAP(Good Agriculture Practice : 농장위생관리)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에서는 가축사육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을 적용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선행요건프로그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리농장 HACCP 적용시 평가하는 선행요건프로그램에는 기존 오리농장에서 농장주가 기록 또는 무기적으로 오리사육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

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및 알관리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평가항목은 육용오리 농장은 46개 항목, 종오리 농장은 5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HACCP 적용농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오리농장은 1개월 이상 아래의 항목별 평가내용이 포함된 자체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성·운영 하여야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 차단방역관리

차단방역관리는 오리 농장내 질병의 유입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질병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차량, 물품 등의 농장내 방문·반입시 소독, 외부인(차량기사, 외부농장 관계자 등)의 오리사 출입 통제, 질병 발생시 원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방문자의 출입관리 대장 기록 등 총 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장시설관리

농장시설관리는 오리사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출입문, 차량소독장치, 주차장, 물품반입창고, 오리사, 분뇨처리장 등의 시설과 농장배수관리, 분변제거시설, 음수 및 사료공급시설, 환기시설, 적절한 사육밀도 및 사육단계별 구분관리 등 총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장위생관리

농장위생관리는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 및 신발 청결관리, 오리사 입구 발판 소독조 관리, 폐사

【표 2】 소 농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 판정 기준

구분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 관리
판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 판정이 없을 경우 : HACCP 적용농장으로 지정 • X 판정이 5개 이하 : 보완조치후 HACCP 적용 농장으로 지정 • X 판정이 6개 이상 : 부적합으로 지정 없이 종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부판정은 9점이상 O, 7점이상△, 7점미만 X로 판정 • 종합평가는 총 점수 150점중 128점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되, X 판정이 있거나 △판정이 5개 이상일때 부적합으로 판정
종합판정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 관리 평가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어야 HACCP 적용농장으로 지정됨	

축 관리, 분뇨처리, 구충 및 구서 관리, 관리인에 대한 위생 및 방역교육, 사육단계별 관리, 살모넬라 (Salmonella Enteritidis) 검사사항 등 총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료 · 동물용의약품 · 음수관리

사료 · 동물용의약품 · 음수관리는 오리농장에서 사육되는 오리를 건강하게 관리하여 도축시 안전한 오리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항목으로 HACCP 인증 배합사료 사용여부, 사료입고 및 보관장소 청결관리, 자가제조 사료관리, 동물용 음용수 관리, 사료 및 급수 시설의 청결관리, 동물용 의약품관리 및 치료시 휴약기간 준수 등 총 1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질병관리

질병관리는 오리농장에서 사육되는 오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항목으로 예방접종, 임상관찰, 수의사의 질병관리, 내 · 외부 기생충 구제, 오리바 이러스성 간염 백신접종,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사항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반입 및 출하관리

반입 및 출하관리는 오리농장에서 사육되는 오리에 대한 개체 이력관리 항목으로서 반입 종오리의 가축거래 기록대장 관리, 구입처, 질병검진 내역 및 예방접종 내역, 반입오리의 임상증상 관찰, 출하오리에 대한 출하일지(출하처, 운반자, 휴약기간, 항생제무첨가사료 급여일 등) 관리 등 총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알관리

알관리는 종오리농장에서 사육되는 종오리에서 생산

되는 알 · 집란 및 집란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으로 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및 검사관리, 선입 · 선출 및 농장표시, 온도변화 최소화, 출하일지(출하처, 운반자, 운반차량의 상태, 항생제 잔류여부 등)관리, 오염란 및 파란 등의 관리, 살모넬라 (Salmonella Enteritidis) 검사, 집란실 · 집란설비 및 난좌의 위생관리 등 총 1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HACCP 관리 내용

HACCP 관리는 HACCP 적용을 위한 예비 5단계와 7 원칙 등 12절차를 통해 위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HACCP팀 구성, 출하 오리 및 알의 특성(품종) 및 취급방법 기술, 가축 및 알 설명서 기술, 농장 평면도 및 사양관리 절차도의 현장일치 여부, 위해분석, 위해요소별 HACCP관리 조치, CCP 설정, CCP에 대한 한계기준 설정, CCP에 대한 모니터링 설정 및 실시여부,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여부, HACCP 계획에 대한 검증, 기록유지 및 교육 · 훈련 등 총 1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HACCP 적용농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오리농장은 1개월 이상 동 평가기준이 포함된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를 작성 · 운용 하여야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④ HACCP 평가 판정 기준

오리농장 HACCP 평가 판정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 관리로 구분 판정하며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항목 평가 판정기준은 [표 2]와 같다.

◎ 오리농장 HACCP 지정 등 절차

1 구비서류

오리농장 HACCP 지정(연장), 지정변경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지정신청 구비서류〉

- ① 축산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 ※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연수원, 대한수의사회,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환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대한양돈협회)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③ 최근 3개월간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최근 1개월간 생산 또는 영업실적 가능)
- ④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 운용 실적
- ⑤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 운용 실적

〈 지정 연장신청 구비서류 〉

- ① 축산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HACCP 적용농장 지정서 사본
- 〈 지정 변경신청 구비서류 〉
- ① HACCP 적용농장 지정서 원본
- ②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③ 소재지 변경시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부 추가 제출

〈 정기심사 신청 구비서류 〉

- ① 축산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연장) 등 신청

① 지정(연장) 신청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농업인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신청서 [표 3]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함)에게 HACCP 지정신청(우편 또는 방문) 및 소정의 접수비(수수료 및 출장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HACCP 지정 유효기간이 지정을 받는 날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정기심사 신청

HACCP를 지정받은 농업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정기심사신청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6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준원장에게 HACCP 지정신청(우편 또는 방문) 및 소정의 접수비(수수료 및 출장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변경 신청

HACCP를 지정받은 농업인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변경신청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4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준원장에게 HACCP 지정신청(우편 또는 방문) 및 소정의 접수비(수수료 및 출장비)을 납부하여야 한다.

HACCP를 지정받은 농업인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농업인 및 농장명 변경

-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장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중요관리점 변경

● 소재지 변경

- 농업인 및 농장명 변경이 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HACCP 시스템이 유지하여야 함

【표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지정(연장)신청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영업허가(신고·등록)번 호	② 영업허가(신고수리·등록)년월일	
	③ 작업장(업소·농장)명	④ 전 화 번 호	
	⑤ 소재지 본 사 공장(농장)		
	⑥ 대표자성명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⑧ 관리책임자	⑨ 주민 등록 번호	
	⑩ HACCP 적용업종 또는 품목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3제2항 제7조제2제1항 제7조제8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지정신청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③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 실적 ⑤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p>2. 지정연장신청의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td> </tr> </tbody> </table>		수수료
수수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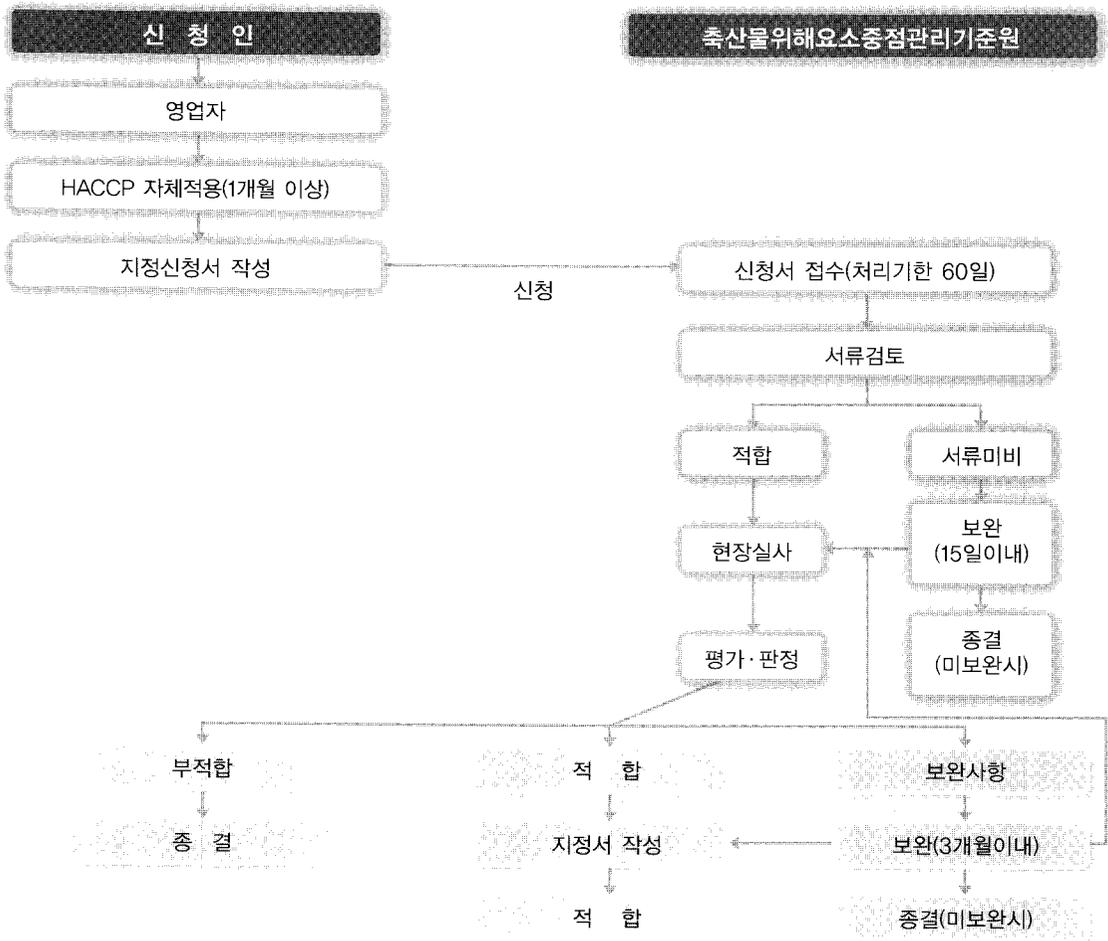
3 지정(연장) 등 절차

① 지정(연장) 및 정기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준원장은 서류 검토결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서류

접수후 60일 이내에 오리농장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거 현장실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표 기준에 부합되고, 자체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 관리기준이 현장 운영사항에 맞게 작성·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4】 HACCP 적용 농장 지정(연장) 신청처리 절차도



지정(연장) 신청의 경우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서가 발급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내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절차가 종결된다【표 4】.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동안 적용해온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운용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내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

니한 경우,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및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준원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해당 농업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변경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준원장은 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류검토 또는 서류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와 소재지 변경시 현장실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표 5】 HACCP 적용관련 민원신청 및 처리기간

구분	민원신청기한	민원처리기한	비고
지정신청	지정하고자 하려는 경우	60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	연장하고자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60일	연장미신청시 지정 종료
정기심사	지정일로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60일	미신청시 지정명령
지정변경신청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7일	

◎ HACCP 적용관련 민원신청 및 처리 기간

HACCP 지정신청을 준비하거나 HACCP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은 HACCP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신청 및 처리기간을 파악해 두면 HACCP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HACCP 적용관련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신청 및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표 5】.

◎ 향후 추진 방향

검역원은 2008년 5월 개발 완료된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에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오리농장에 한하여 HACCP 적용을 추진한바 있으며, 동 평가기준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HACCP분과위원회 심의, 입안예고, 법제·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 6월 말경에 동 평가기준이 고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효율적인 오리농장 HACCP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리농장 HACCP 적용 실행 매뉴얼을 개발하여 오리사육 농업인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그리고 HACCP 적용을 통해서 현장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맺음말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오리 사육농장에서 기록 또는 무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한 것으로 오리사육 농가가 평가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육농가가 HACCP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면 오리농장 HACCP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HACCP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HACCP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이 HACCP 교육을 받으면 HACC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오리농장에 대한 HACCP 도입은 오리사육 농업인의 적용의지가 중요하므로 지금부터 평가기준에서 요구한 수준으로 관련 기준서를 작성하여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오리농장에 대한 HACCP 적용으로 국민의 주요 축산식품의 하나인 오리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ACCP 관련정보는 검역원 홈페이지(-업무마당-축산물위생-HACCP)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오리농장 HACCP 추진관련 궁금한 사항은 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7)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기술상담센터(031-443-6160)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양기관을 활용하면 HACCP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첨부1 가축사육단계(닭·오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I. 닭·오리 농장현황

① 축산업등록번호				② 등록연월일				
③ 농장명				④ 전화/팩스				
⑤ 농장 소재지								
⑥ 대표자성명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⑧ 관리책임자								
⑨ 사육규모 (수수)	종계·종오리	⑩ 계		⑪ 육성		⑫ 산란		
	산란계	⑩ 계		⑪ 육성		⑫ 산란		
	육계·육오리	⑩ 계		⑪ 육성				
⑭ 품종		⑮ 사육형태		평사 (무창 유창)		Cage (무창 유창)		
⑯ 면적(m)	⑰ 합계		⑱ 사무실		⑲ 계사(동)		⑳ 사료보관장 (보관능력)	
⑳ 시설의 종류		㉕ 출입구소독시설		㉖ 분뇨 처리장		㉗ 위생물품 보관실		
		차량		사람		㉘ 탈의실		
㉙ 보유 유무(O/X)						㉚ 기타		
㉛ 관리인원(명)								
㉜ 기타 특이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II. 닭·오리사육 농장 평가사항

구분	항목	평가내용	판정 (O/X)
차단방역 관리	1	출입자 및 농장물품 등에 대한 자체 차단방역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농장 입구에는 농장안내문과 방역경고문 등이 있는가?	
	3	농장 방문자에 대한 출입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는가?	
	4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및 반입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5	농장 방문자를 위한 방역복, 장화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6	계사·오리사 내부에 외부인(차량기사, 외부 농장관계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7	농장외곽은 울타리 등으로 구분(경계기) 되어 있는가?	
농장시설 관리	1	농장시설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농장에는 차단시설, 차량소독장치, 주차장, 물품반입창고, 계사·오리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3	농장은 배수가 잘 되고 있는가?	
	4	계사·오리사는 사육단계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5	각 계사·오리사는 적절한 사육밀도로 사육되고 있는가?	
	6	계사·오리사바닥의 분변 등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7	계사·오리사에는 충분한 음수와 사료의 공급이 가능한 시설과 구조로 되어 있는가?	
	8	계사·오리사에는 온도·습도 및 환기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9	분뇨처리장 바닥은 방수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료로 되어 있으며, 분뇨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농장위생 관리	1	농장위생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 및 신발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며 사용되고 있는가?	
	3	계사·오리사 입구에는 발판 소독조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4	폐사축 처리현황이 기록되고 있는가?	
	5	계사·오리사내 분뇨는 계사·오리사구조에 맞게 주기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6	농장 내 구서/구충 관리가 되고 있는가?	
	7	관리인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를 하고 있는가?	
	8	사육단계별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가?	
	9	계군·오리군 및 사육시설에 대한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사료·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	1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배합사료는 HACCP 인증 배합사료공장의 사료를 급이하고 있는가?	
	3	사료에 대한 입고관리가 되고 있는가?	
	4	사료보관장소는 정기적인 청소·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	사료저장용빈, 자동급이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6	자가제조 사료를 급이하는 경우 사료제조 및 설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7	출하 예정 계군·오리군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8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관리가 되고 있으며, 사용 후 남은 동물용의약품 및 빈 용기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9	동물용 음수수는 동물이 먹기에 적합하고, 1회/년 이상 정기적인 검사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10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독 관리되고 있는가?	

구분	항목	평가내용	판정 (O/X)
질병관리	1	질병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가축질병 예방관리(백신접종, 임상관찰 등)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기록되고 있는가?	
	3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가?	
	4	내·외부 기생충 구제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5	중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의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가?(답에 한함)	
	6	중계장에는 추백리, 가금티푸스, 마이코플라즈마(M. gallisepticum, M. synoviae)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답에 한함)	
	7	오리바이러스성 간염(DVH)에 대한 예방백신을 실시하고 있는가? (오리에 한함)	
	8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가? (오리에 한함)	
반입 및 출하관리	1	반입 및 출하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중계장·종오리장은 가축거래기록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가?	
	3	계군·오리군의 구입처(중계업·종오리업등록증), 질병검진 내역, 예방접종 기록 등 관련기록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4	도입 계군·오리군에 대한 임상증상 관찰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5	출하 계군·오리군에 대한 출하일지(출하처, 운반자, 휴약기간, 항생제 무첨가사료 급여일 등)를 확인 기록하고 있는가?	
알관리	1	알·집란 및 집란시설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3	집란실은 방충, 방서, 환기시설이 되어 있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4	집란 및 집란 라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5	출하하는 알은 선입선출이 되고 농장 표시가 되어 있는가?	
	6	알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7	집란 및 선별한 알은 온도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8	집란실 및 알보관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9	출하 알에 대한 출하일지(출하처, 운반자, 운반차량의 상태, 항생제잔류여부 등)를 확인하고 있는가?	
	10	오염란, 파란 등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11	알에 대한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2	집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종합판정	종합평가는 X 판정이 5개 이하일 경우 수정보완토록 조치하되, X 판정이 6개부터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구분	항목	평가내용	판정 (O/X)
H A C C P 관 리	1	HACCP팀을 구성하고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지정하고 있는가?(10점)	
	2	출하 닭/알 · 오리/알의 특성(품종)과 취급방법을 기술하고 있는가?(10점)	
	3	가축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10점) (1) 용도 (2) 품종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4) 구매자, 도축장 출하시 운반자 (5)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여부 (6) 항생제 무침가사로 급여기간 (7) 기타 필요사항	
	3-1	알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10점) (1) 보관온도 (2)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3) 구매자 (4) 취급 및 운반상 주의사항 (5) 용도 (6) 기타 필요사항	
	4	농장 평면도, 사양관리 절차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고 있는가?(10점)	
	5	반입 · 사육 · 집란 및 출하단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분석하고 있는가?(10점)	
	6	위해요소별로 HACCP관리 조치(방법)를 기록하고 있는가?(10점)	
	7	CCP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10점)	
	8	CCP에 대한 한계기준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10점)	
	9	CCP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는가?(10점)	
	10	모니터링은 CCP마다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10점)	
	11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 이탈시 적절하게 처리하고 개선조치 등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10점)	
	12	HACCP계획에 대한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10점)	
	13	HACCP계획에 대한 기록 및 유지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10점)	
	14	HACCP계획을 정기적으로 교육 · 훈련하고 있는가?(10점)	
15	HACCP관리기준서를 작성 · 비치하고 있는가?(10점)		

순위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적부판정 (○,△,×)	비고
		종합평가		○ : △ : × :	

※판정기준

- ① 점수는 각항별 10점으로 한다.
- ② 적부판정은 9점이상을 ○, 7점이상을 △으로, 7점미만을 ×로 판정한다.
- ③ 종합평가는 총점수 150점중 128점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되, ×판정항이있거나 △판정이 5개항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